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69
----------	-------

발의연월일 : 2025. 6. 25.

발 의 자 : 오세희·박희승·전진숙
김동아·강득구·조정식
김태선·민병덕·안태준
이용선·이소영·허성무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품질유지기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 없이 품질유지기한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식품표시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아이스크림류나 식용얼음의 경우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발효주(탁주나 약주)를 제외한 대부분 주류에 대해서는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등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 많은 소비자는 제조시일 오래된 제품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음.

이에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매년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음식등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4조의3 신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품질유지기한”이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소비기한 등 표시의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음식등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국민 건강 및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에게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2. (현행과 같음) 13. <u>“품질유지기한”이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u>
<u><신설></u>	<u>제4조의3(소비기한 등 표시의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음식등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국민 건강 및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에게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u>